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허 성 욱 교수

CONTENTS

Section 01 리니지 II case

Section 02 개인정보의 개념

Section 0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Section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Section 05 Concluding Remark and Q&A

Section 01

리니지 II case

01

리니지 II case



01

리니지 II case

- MMORPG 리니지 II
- 2005. 5. 11. – 5. 16.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노출사건 발생
- 위 기간 중 50만명 이상 이용자들이 게임 접속
- 5명의 원고가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01

리니지 II case

- 법률적 쟁점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 '유출' 해당여부
- '손해'의 발생여부: 경제적 손해 vs. 정신적 손해
- 위자료의 액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40057 손해배상(기)
원	고	1. 정○○ 광양시

피	고	주식회사 엔씨ooo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표이사 김oo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계약상,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 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에게는 그 사업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더 고도로 발달될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실적, 경제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할 위자료로 원고들 각자에게 500,000

원칙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5.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욱 _____

에스-오일의 고품력 고급휘발유
에스 가솔린 프리미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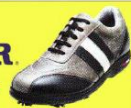
S Gasoline
Premium

朝鮮日報

금강 전문 골프화 -

PGA TOUR

금강제화



서울 ☁ 비 조금 후 낮에 갠 11~18℃ ▶상보 A11면

1920년 3월 5일 창간 ☎080-900-0077, (02)724-5114

chosun.com

단기 4339년 (음력 4월 2일 戊子)

2006년 4월 29일 토요일 라2

리니지 게임 회원정보 유출 피해 엔씨소프트社에 배상 판결

법원 "1인 50만원 줘라"… 소송 줄이들دت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첫 판결이다.

▶관련기사 A10면

현재 리니지 명의 도용(盜用) 피해자 8500여명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414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 정보 유출의 경우 3만 여명의 실명(實名),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8일 지난 2004년 5월 발생한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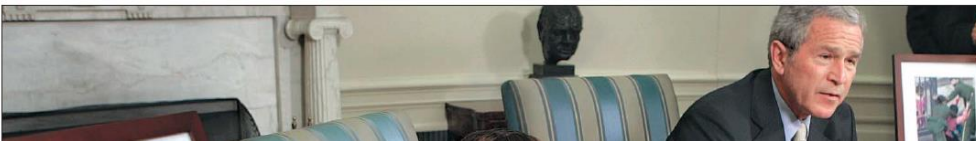
의 과실(過失)을 인정하고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그해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측이 이 사건에서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

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아이디(계정)와 비밀번호의 유출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게임회사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약관, 빈약한 소비자 보호체계 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은진기자 (별로그)monof.chosun.com



정몽구회장 구속 수감

법원 "증거인멸 우려"

현대차그룹 정몽구(鄭夢九) 회장이 28일 밤 구속, 수감됐다. 구속 사유는 비자금 1300억여원 조성(횡령) 및 회사측에 40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다. 정 회장은 이날 밤 10시40분쯤 별다른 말 없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관련기사 A2·3면

서울중앙지법 이종석(李棕錫)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 회사와 주주에게 귀속된 점에 비춰 실행선고가 예상된다"면서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피의자의 건강,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더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낮 정 회장을 상대로 3시간 30분 동안 벌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피해가 너무 크고, 증거 및 진술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정 회장 아들인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과 임원 등 10여명에 대한 처벌 수위 검토에 착수했다. 정 사장은 불법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뇌위 및 아부금속의 채무 550여원을 편법적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혈세(血稅)를 탕진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는 대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현대차측이 사용한 200여억원을 포함,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1200억원대의 최종 사용자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별로그)jaydie.chosun.com

권원성기자 (별로그)icapedm.chosun.com



구치소로 28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가는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전기명기자 (별로그)gibong.chosun.com

01

리니지 II case

- 후속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
-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사건
- 엘지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사건
- GS 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
- KT, 옥션, 여기어때
-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 페이스북

Section 02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식별성' 중심의 개인정보개념
-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명단
- 단말기 고유식별자 IMEI, USIM 일련번호 조합정보
-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 대학교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정보

Section 0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0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엄격한 사전동의(opt-in) 방식의 보호
- 법정손해배상, 3배배상, 형사처벌, 양벌규정,
- 규범과 현실의 간극

0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 정보화시대 가치의 원천(oil)으로서 데이터
- 정보의 보호 뿐만 아니라 활용의 중요성 대두

- 비식별화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06. 관계부처합동]
- 비식별화의 수준, 비식별화 이후 재식별
-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전문가 판단 방식
 - 세이프하버 방식

0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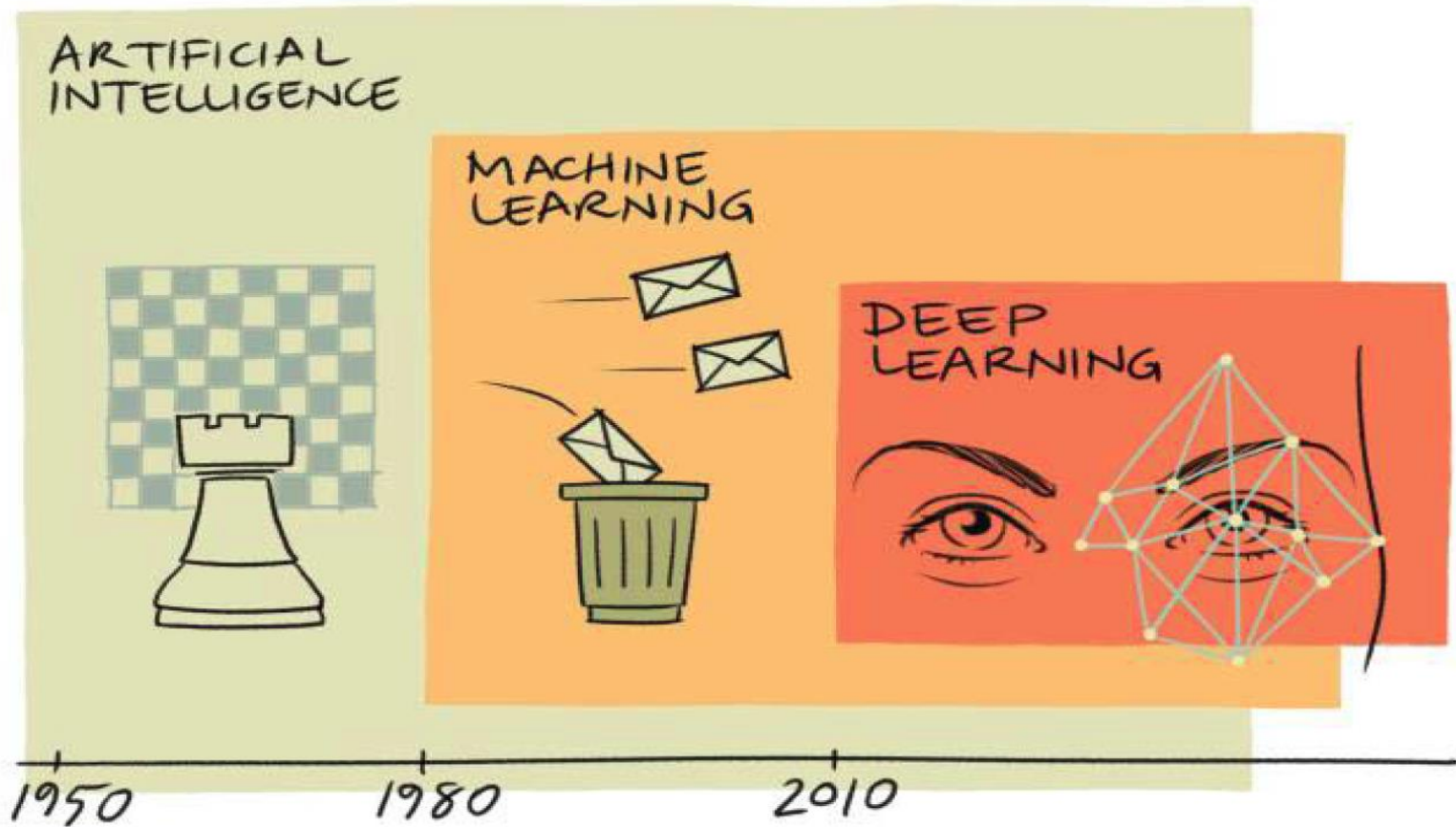
-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 영국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 EU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2014
 - differential privacy, noise addition, k-anonymity, l-diversity, t-closeness
- EU GDPR
 - Anonymous information
 - Pseudonymous information
- 일본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 익명가공정보

Section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ivacy, Datatilsynet, the Norweg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2018)

고학수 (2018)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 핵심은 data
- data의 수집과 가공 처리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issue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책임성(Accountability)
 -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책임성
 - 책임성의 귀속주체: 개발자 or 알고리즘 그 자체
 - 오류에 대한 책임? or 지나친 진실에 대한 책임?
- 투명성(Transparency) or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 black box?
 - How much?
 - What to explain?
 - EU GDPR: "Right to explanation"
 - 개헌안 "정보기본권"

04

인공지능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의 미래
-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 데이터의 보유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이슈
-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의 문제
- 규제와 형태와 담당자

Section 05

Concluding Remark and Q&A

Thank you!